

#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4. 30 평창군수(건설과장)
- 나. 회 부 일 자 : 2001. 6. 21
- 다. 상 정 일 자 : 2001. 6. 21 제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특  
(2001. 6. 21)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건설과장 박현창)

### 가. 제안이유

- 자연환경 보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골자

- 자연경관 보존의 기본원칙
  -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 산림·하천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의 자제유도, 자연생태계의 보존
  - 도로 및 철도 건설시 경관보존을 위한 노력(단절식→터널식)
  - 역사·문화유적지 주변의 난개발 자제
-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 산림·하천·호수·역사·문화유적지 주변,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보존 및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경관형성계획 수립.
  - 계획의 개요 및 경관형성의 기본구상
  - 자연경관보존지역의 관리계획
-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및 경관심의 위원회

- 기본계획을 수립 생태계·경관적 가치가 우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고시(단,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건축물의 신축·대수선,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재식 또는 벌채, 대지 조성, 주택건설등 행위는 경관형성 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따라 권고·조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가. 자연환경 보전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동법 제44조는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본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평창군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

다 주요내용은

(1) 적용범위(안 제3조) - 공공사업(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시행사업) 군수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맡은 민간사업

(2) 자연환경 보전지역지정(안제9조)

- 대상지공고 → 주민의견 수렴 → 경관심의 위원회 심의 → 지정

(3) 제한내용(안제11·13조)

(가) 임목벌채·토지형질변경 제한 및 출입·취사·야영행위 금지

(나) 대 상 : 건축물의 신축·대수선·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수목의 식재 또는 벌채  
 대지조성  
 옥외광고물

## 기타 경관형성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 또한 본 조례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평창군 경관형성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어 자연경관계획 수립서부터 자연경관 보존 지역지정·관리까지를 사전심의토록 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음.

마. 기타 법령형식·절차·자구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1부